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41
----------	-------

발의연월일 : 2025. 2. 27.

발 의 자 : 김태선 · 박홍배 · 허성무
윤후덕 · 김주영 · 김병주
손명수 · 허 영 · 이용우
박 정 · 강득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에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마련되어 있으며, 2026년 6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특별법의 시행에 맞추어 국유재산 특례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안 별표 제223호 신설).

법률 제 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 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223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1. 12. 31.

부 칙

이 법은 2026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